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 월간 뉴스레터

2016년 5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 Contents

### 회계정보

- 금융감독원, 2016년 회계감리 업무 운영계획' 발표
-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 한국회계기준원, 모바일 웹서비스 개시

### 세무정보

- 한- 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 한- 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주요 합의내용
- 2016년 주민세 증업원분 신고납부 안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 최신예규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 : 06179)

QRM 본부 부실장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2009 - 5718

## 회계소식 등

금융감독원,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개요

### ■ 개요

금융감독원, 2016년 분식회계위험이 높은 회사 중심으로 154사 감리 실시 예정

주요내용

### ■ 주요내용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1. '15년에 감리조직개편,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리대상 회사수를 대폭 확대('14년 89사→'15년 131사)함
2. '16년도에는 테마감리 확대, 회계감리 쇄신방안의 지속 이행 등을 통해 감리 효율성을 높여 '15년보다 23사(18%) 증가한 154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
  - ▶ 테마감리는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감리로서, 심사감리 중 테마감리 비중을 '15년 40%에서 '16년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2016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 □ 2016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1.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 ▶ 수년간 다수의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 그동안 1건으로 취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향후에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 (\* )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입법 예고('16. 1. 7)
2. 회계의혹에 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 새로운 테마감리 이슈를 지속 발굴하여 상시감독체계 구축
  - ▶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이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
  - ▶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특별감리 착수
3. 자율지정신청·포상금확대 등을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감독을 유도
  - ▶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감리인센티브(감리대

상 선정 유예) 부여

-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 확대를 추진하고 회계부정 신고제도 및 포상 실시사례 등을 적극 홍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개요

■ 개요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주요내용

■ 주요내용

공시부문 개선방안

□ 공시부문 개선방안

1. 분반기보고서 기재간소화 등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하여 부담이 되고 있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으로 공시서류 작성 부담 완화
2. ‘16 년도에는 투자설명서 제도의 획기적 개선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하여 정보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및 교부비용 절감
3.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1년간 전면 면제,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별점 감경 요건 확대
4. 기업공시종합시스템 편의성 제고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되어 공시시스템 (DART, KIND)에 전송되도록 시스템 고도화

회계부문 개선방안

□ 회계부문 개선방안

1. 상장예정기업 등의 지정감사 비용부담 완화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하여,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에 따라 택일하여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2.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3.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 월초일”로 변경하여 통상 6 월초 감사인 지정이 많은 중소 코스닥 상장기업의 부담 완화
4. 연결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를 위한 경우, 3 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 향후 추진계획

- ▶ 2016 년 2/4 분기부터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 추진

한국회계기준원, 모바일 웹서비스 개시

주요내용

■ 주요내용

1.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홈페이지([www.kasb.or.kr](http://www.kasb.or.kr)) 개편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2일 모바일 웹서비스([m.kasb.or.kr](http://m.kasb.or.kr))를 개시하였음
2. 모바일 웹서비스는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요약, 국내외회계뉴스 등 기준원 홈페이지의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으로 접속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 2013 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한국이 마카오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 년여만인, 2016 년 1 월 기획재정부는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 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였습니다.

□ 한국과 마카오가 합의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
-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

□ 향후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 한국의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한국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 이에 따라,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한국은 그간 18 개 국가\*와 양자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을 강화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금융정보자동교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4 개국(북아일랜드, 마셜제도, 바하마, 버뮤다) 발효 및 14 개국 서명 또는 가서명(바누아투, 안도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저지, 건지,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앵귤라, 코스타리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모리셔스)

- 이와 관련하여 한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역외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주요 합의내용**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터키(앙카라)에서 개최된 제 3 차 한- 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① (배당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지분 25%이상 보유시)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 터키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 (‘13년) 2,100 만불 (‘14년) 2,500 만불

\*\* 한편, 지점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후 본국 송금액에 대해 7.5% 지정세 부과

②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현행 15%(2년 초과 채권 10%)에서 10%로 인하

\* 터키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 (‘13년) 1,200 만불 (‘14년) 800 만불

③ (혜택의 제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

④ (조세징수 협조)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

□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

□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이에 따라,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

○ (과표·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면세기준 변경내용

○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

종전	변경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신고납부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써 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년 한시법) (“원샷법”) 이 2016년 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신속·간편한 자발적 사업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동법은 ①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② 생산성 향상과 ③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합니다.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 여부,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및 지침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주요 지원 특례 >

□ **(상법 특례)**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간편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을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비핵심 사업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하여 핵심부문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해짐.

○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피합병기업의 시총이 합병기업 시총의 20% 이하인 경우, 합병기업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함. 현행 「상법」은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받는 애로가 있었음.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합병 반대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현행 「상법」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하였음.

○ (간이합병 요건 완화) 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시 피합병회사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가능하나, 이를 80%로 완화함.

○ (관련 절차기간 단축) 승인기업에 대해 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 ②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③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음. 추가로, 승인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시 승인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였음.

□ **「공정거래법」 특례**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됨.

○ (지주회사 규제특례)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②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③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을 경감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함. 또한,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함.

## 최신예규

### ■ 법인, 법규과-687, 2014.06.30

-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과세된

횡령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국조,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 [법령해석과-2065] , 2015.08.25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 발생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과 관련하여  
거주지국(홍콩)과 원천지국(인도) 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가능한 것임.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r/>(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